

1. 개정이유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나.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함.

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자”를 “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물품”을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판매(반출)의제”를 “반출의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과세물품제조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한다.

별지 제6호, 제7호, 제7호2, 제7호의3, 제28호의3, 제4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2조의2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분기(월)실적 []정기 []수정 신고서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 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가)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나)
		(5) 미납세세액		(다)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가) - 면세(나) - 미납세 세액(다))		(라)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마)
	(6)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교육세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바)
	총 납 부(환 급) 세 액(라) - (마) + (바)			
농어촌 특별세	(8)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9)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신고	(10)과 세 표 준 및 산 출 세 액			
	(11)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임자 (신청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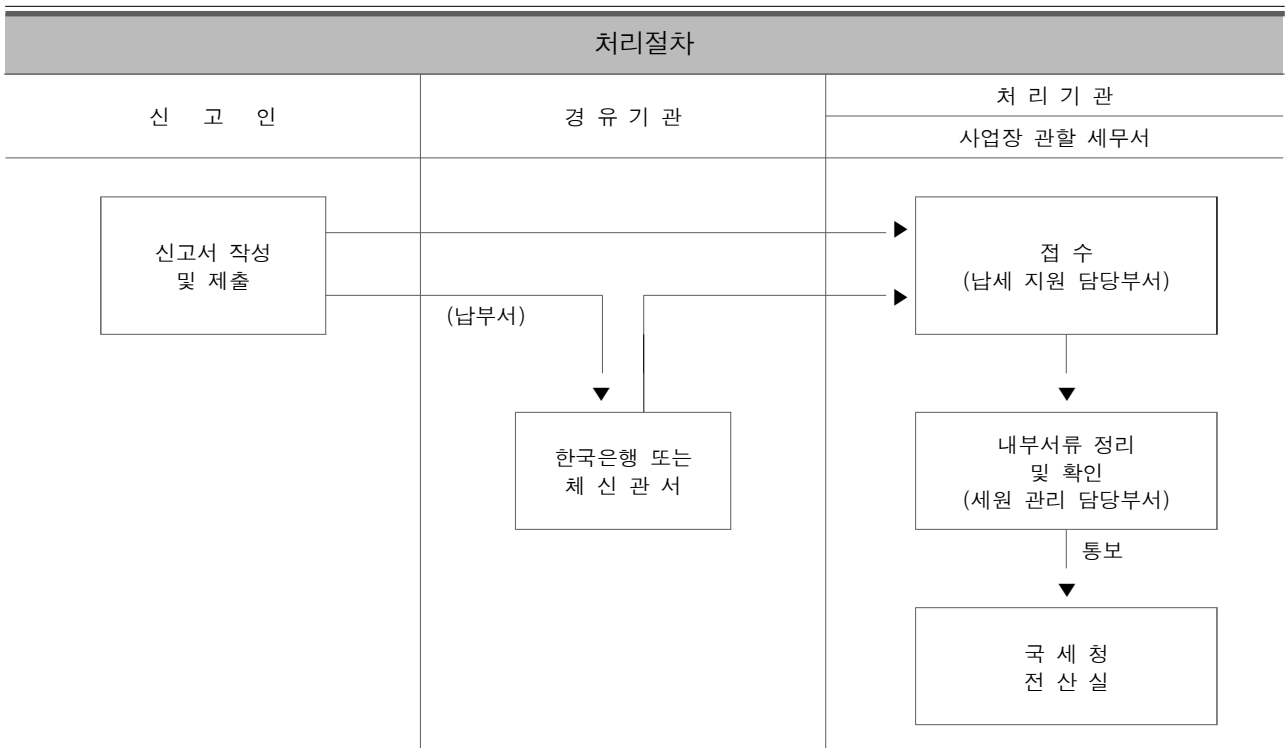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297mm×210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 감면 · 면세 ·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 ⑧-1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를 적습니다.
- ⑨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 ⑩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⑪ 산출세액: ⑨과세표준×⑩세율을 적습니다.
- ⑫ 면세 · 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 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 ⑬ 공제 · 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⑭ 납부세액: ⑪산출세액 - ⑫ 면세 · 미납세액 - ⑬공제 ·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⑮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 ⑯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⑭납부세액 × 세율
- ⑰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⑱ 반출승인 · 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 · 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군납·외국인전용 판매장·조건부 면세 코드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	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수입·제조장 구입	법 §16 ① 1.	222001	수출	법 §15 ① 1.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환입·수입	법 §14 ① 2.	225002	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수입	법 §16 ① 2.	2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245022	농·임·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	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법 §16 ① 3.	2260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1	원자로·원자력·동위원소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법 §18 ① 1.
2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	외국에서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법 §19 2.	227003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	법 §18 ① 2.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령 §19 ③ 1.	228003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9 3.	227005	장애인·다자녀양육자·여객운송·대여·환자수송·연구용 승용차	법 §18 ① 3.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령 §19 ③ 2.	228004	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장비품	법 §19 4.	2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법 §18 ① 4.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세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3.	228005	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7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	법 §18 ① 5.
2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령 §19 ③ 4.	228006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등	법 §19 6.	227008	학교·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제로의 사용 목적 표본 또는 참고품	법 §18 ① 6.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물품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령 §19 ③ 5.	228007	국가·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9 7.	227009	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학술연구용·교육용 물품	법 §18 ① 7.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6.	2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①	2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석유정제업자에게	령 §19 ③ 7.	228009	가주이전 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자가용품	법 §19 9.	227011	외항·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8 ① 9.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④	211013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령 §19 ③ 8.	228010	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이사화물	법 §19 10.	2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8 ① 10.
200006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109 ⑦	211014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반출 · 환입	령 §19 ③ 9.	2280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소액물품	법 §19 11.	2270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외의 소모품	법 §18 ① 11.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령 §19 ③ 10.	228012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광고용품	법 §19 12.	227018	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법 §14 ① 6.	228013	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해외 반출	법 §19 13.			
						2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공제 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4.			
						228015	개별소비세 비부과 수출품의 6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5.			
						2280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 "령"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사업장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면세· 미납세액	공제· 감면세액	납부세액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본점 0000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1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2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3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0004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합계			과세반출									
			면세반출									
			미납세반출									
			합계									

과세장소 과세표준 년 분기 실적 []정기 []수정 신고서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①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 내용

과세대상 구분		[] 경마장, []투전기시설장소, []골프장, []경륜·경정장, []카지노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과세표준 (임장인원)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㉑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㉒
	총 납 부(환 급) 세 액(㉑ + ㉒)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농어촌 특별세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7)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 임 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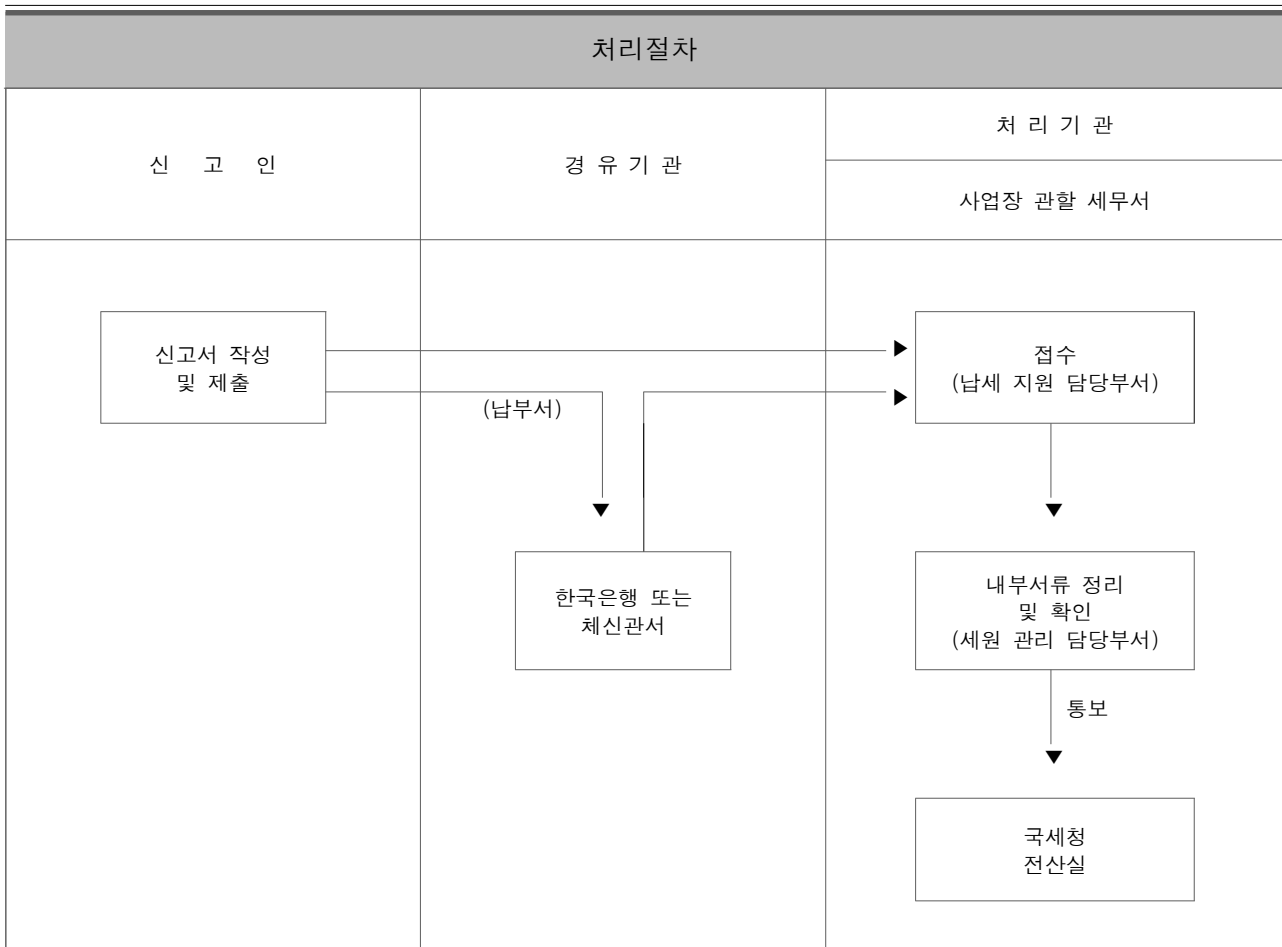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기간 : 년 분기 실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사업장 일련 번호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①과세표준(인원)	②세율	③산출세액 (①×②)	④면세액	⑤납부세액 (③-④)		
본점 0000			과세							
			면세							
			합계							
0001			과세							
			면세							
			합계							
0002			과세							
			면세							
			합계							
0003			과세							
			면세							
			합계							
0004			과세							
			면세							
			합계							
합계			과세							
			면세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년 월 실적

[]정기 []수정 신고서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2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㉓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㉔
	총 납 부(환 급) 세 액(㉓ + ㉔)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임자 (신청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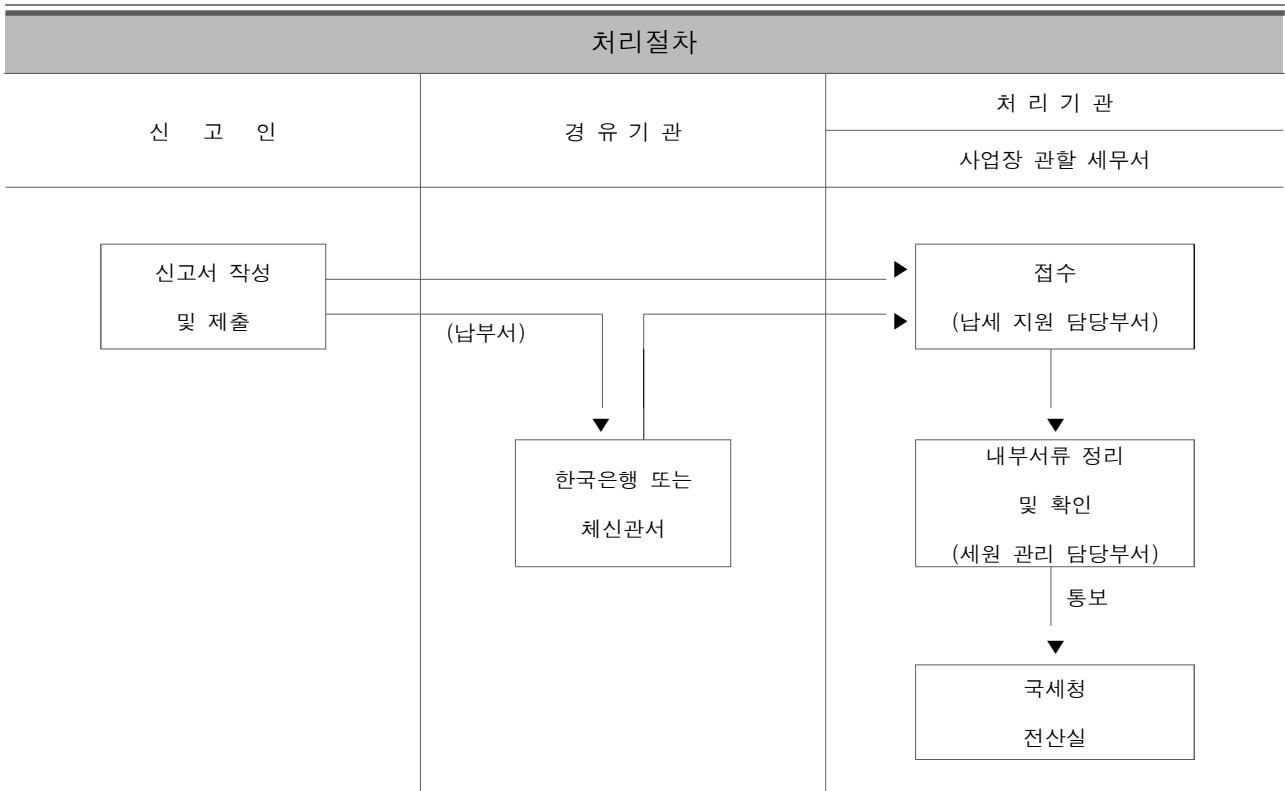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년 실적 []정기 []수정 신고서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①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2)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3)총매출액 ((1)-(2))			
	(4)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00억원 이하	뒤쪽참조	
		500억원 초과	뒤쪽참조	
		1천억원 초과	뒤쪽참조	
		합 계		㉔
	(5)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교육세	(6)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㉕
	납 부(환 급) 세 액(㉔ + ㉕)			
	(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8)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임자 (신청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장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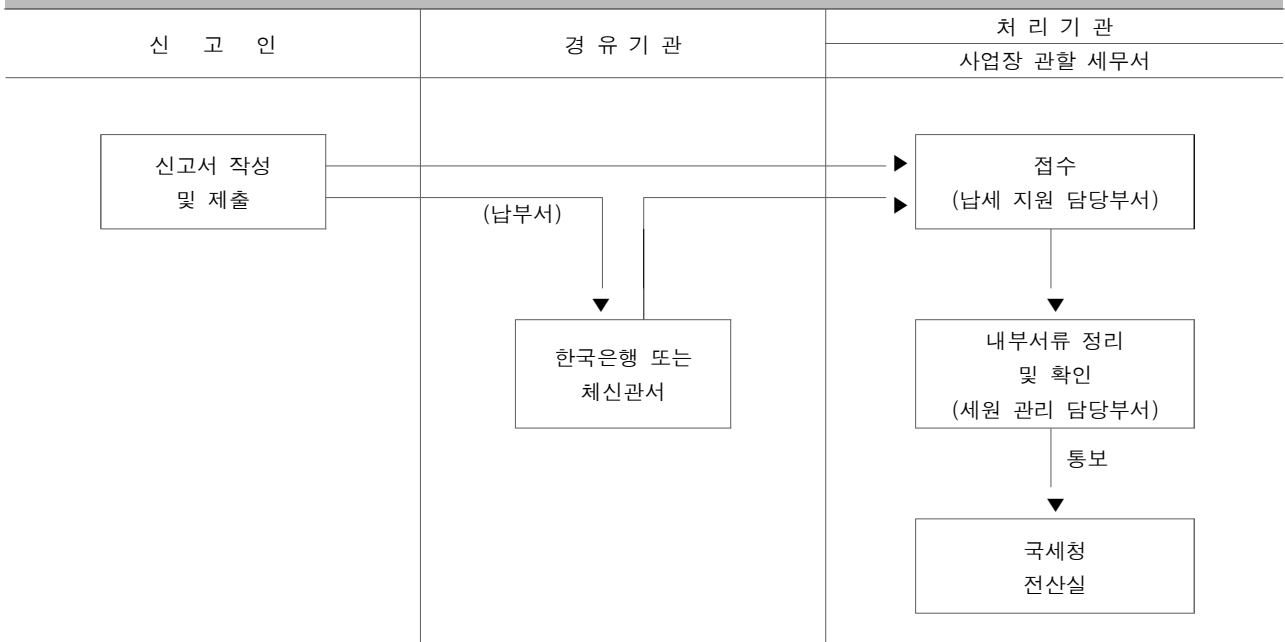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세물품 환입 [] 신고 및 확인신청서 []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⑥ 제조장 소재지	⑦ 사업자 등록번호	
환출자	⑧ 성명(대표자)	⑨ 상호(법인명)	
	⑩ 환출장소	⑪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고 내 용

⑫ 환입 물품명	⑬ 수량	⑭ 규격	⑮ 단가	⑯ 가격	⑰ 과세표준	⑱ 납부세액	⑲ 적요
⑳ 반출 연월일	년	월	일	㉑ 환입 연월일	년	월	일
㉒ 환입 사유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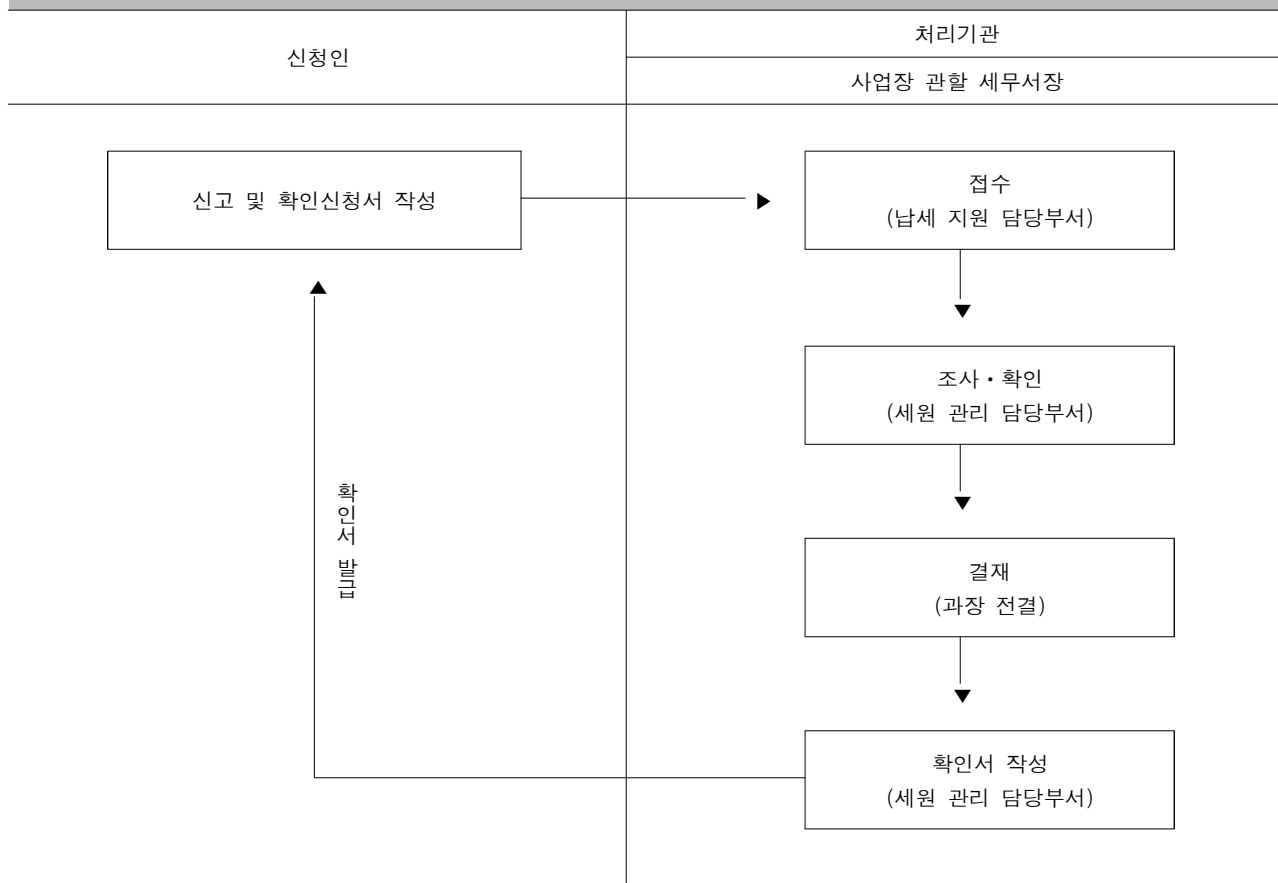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⑪ 생년월일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통보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고인 (반출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판매·반출 장소	반출연월일

반입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②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반 입 장 소	자동차등록연월일

면 세 대 상 물 품 명 세

차 종	수 량	배 기 량	③반출가격	세 율	면 제 세 액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명	
④ 차 대 번 호				연 식	
면 세 사 유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 의 참 고 사 항

장애등급	장애 급	⑤중고차량 여부	여, 부	기타참고사항	
------	------	----------	------	--------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항에 따라 면세 반출하였음을
(면세 반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 세관장 귀하

위와 같이 조건부로 면세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관 장 직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고인 제출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업자등록증명(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다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다자녀양육자(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이하 동일)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제4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다자녀양육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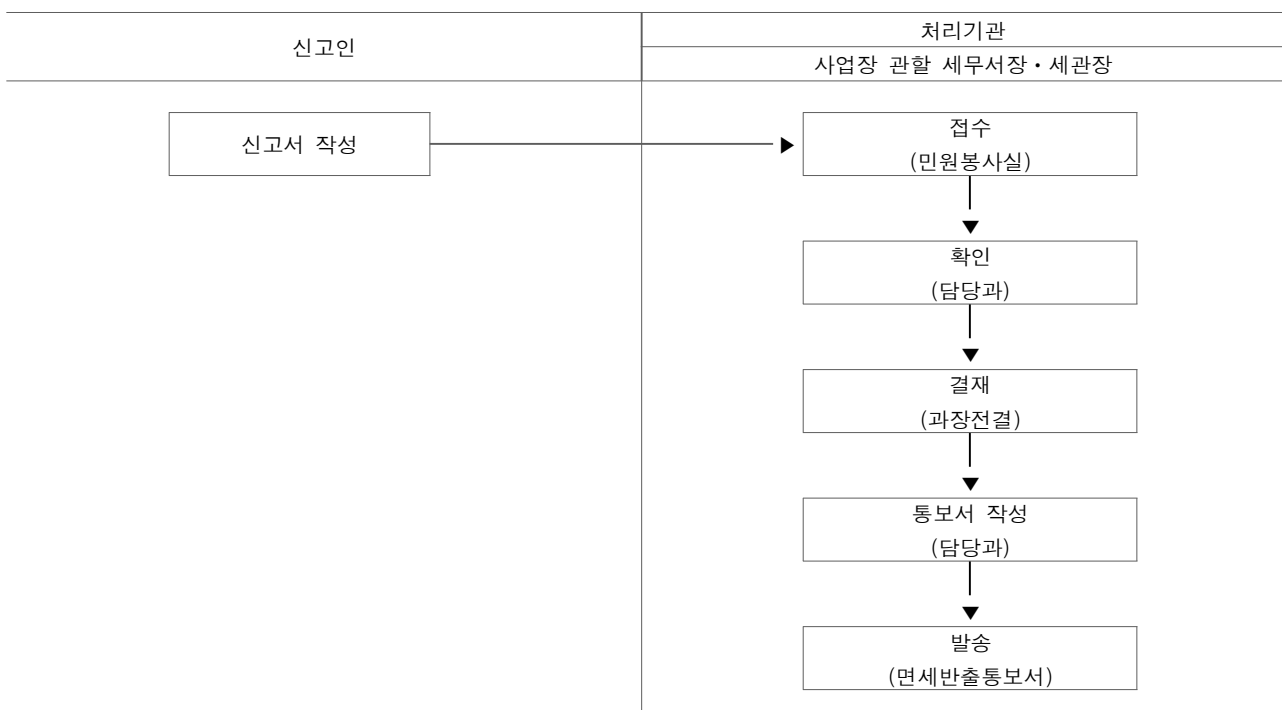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③, ④란만 작성하고, ③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자동차인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 ----- ----- -----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1.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 ----- ----- <u>자(영 제2조의2제1항 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 (생략)

제2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 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

--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

----- 반출의제 -----

-----.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 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u>과세물 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 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 업장소</u>의 개업·변경·폐업 신 고서에 따른다. ②·③ (생략)	<u>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 람 4명</u> 2. <u>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 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u> 3. <u>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 명</u> ③ <u>심의회</u>의 구성·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 ----- ----- <u>과세물 품제조업·과세장소·과세유흥 장소·과세영업장소</u>----- ----- -----. ②·③ (현행과 같음)
---	--